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주 동 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1. 머리말

1987년 이른바 민주화운동 이후 정부가 언론자유화 정책을 취함에 따라 기존 언론계에서 고착돼 온 과점적인 경쟁제한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후 전국적으로 신문들이 창간 또는 복간되어 그 수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방송의 경우에도 새롭게 라디오방송, CATV, 지역민방 등 수많은 방송채널들이 등장하였고 지금은 곧 위성방송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언론계는 양적인 확대를 계속 보여 왔다.

이런 언론환경의 변화가 한편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정보화를 진전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사간 시장경쟁을 격화시키고 이에 따른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언론보도를 유발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등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언론에게 자유와 경쟁의 폭이 크게 확대됐으나 언론의 윤리수준은 그만큼 향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의 진전이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음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문제는 전통적인 '홀로 있을 권리'의 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받기에 이르르고 있기도 있다.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러한 침해는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언론의 역기능과 언론에 의한 개인법익의 침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져가면서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 여론도 함께 비등해 왔다.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더불어 바뀌어져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언론자유는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독재정권이 몰려나고 민주적 정부가 들어선 오늘날 언론은 오히려 언론과 개인의 관계에서 조명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법익의 침해와 그에 대한 피해구제의 모색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변화의 일면으로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반론권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언론소송과 반론 요구가 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1980년대 말 민주화 등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하고 시민의 권리의식의 수준이 향상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개인의 욕구와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증대한 것도 같은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언론의 자유와 개인 법익의 침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다같이 국민의 기본권이면서도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서로 미묘한 상호관계에 놓일 수 있다. 근대 시민사회 이후 언론 자유의 바탕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다른 자유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여론형성에 의존하게 되는데, 언론은 보도와 논평을 통하여 이런 여론 형성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이 이처럼 개인의 인격 형성과 민주주의사회의 발전에 토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 고전적인 자유주의 사상가들도 그런 자유를 주장한 적은 없다. 예를 들어 J. S. Mill은 자유의 개념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의 자유를 논했고, J. Locke의 사회계약설도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재산과 자유의 포기를 전제하고 있다. 고전적 언론자유를 논한 《아레오파지티카》의 J. Mill 역시 크롬웰의 청교도 정권하에서 구교 서적에 대한 검열과 압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고전적 자유 개념 역시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국가법익이나 사회법익, 개인법익과 충돌하는 것은 사회 현실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행위는 헌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21조 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이 개인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 인격권의 보호와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철저히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명예와 같은 개인 인격권의 보호를 강화하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이유가 있다. 실제로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 문제만 보더라도 언론보도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언론사간의 경쟁 격화와 선정적 보도의 확대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요구도 크게 늘고 있다.

예컨대 반론보도청구를 위한 중재신청 건수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50건 안팎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부터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89년 121건, 1990년 159건, 1991년 220건, 1992년 381건, 1993년 423건, 1994년 541건, 1995년 528건, 1996년 556건, 1997년 490건, 1998년 602건, 1999년 641건, 2000년 607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밖에 법원에의 반론보도 제소 건수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310건으로 달하여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매스미디어가 지니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언론이 신속한 보도를 추구하는 나머지 불가피하게 오보가 야기될 수도 있으며 극단적으로 언론이 악의에 의한 왜곡보도나 편파보도를 행할 경우 그 표적은 된 개인이나 집단들은 명예나 인격상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언론보도는 특히 대중매체로서의 엄청난 전파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그 남용에 대하여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口頭의 경우라면 언론보도가 미치는 개인의 명예훼손 등 피해의 정도가 극히 한정되었지만, 수백만의 독자나 시청자를 상대로 하는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는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며 따라서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 훼손 등의 피해는 거의 치명적이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인격권을 앞세우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그만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두 가지 가치인 개인 법익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서로 불가피하게 충돌을 빚게 된다. 이런 충돌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언론의 자율적 책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법률문제로서는 상충하는 언론자유와 기타 법익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가령 현실적으로 언론보도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면책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법률적 쟁점이 되곤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인격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

때문이다.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효과적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게 된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조화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결국 이런 과제는 사회적 수준, 민도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전통적으로 자율과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세분해서 보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가 서로 다르다.

3. 언론피해구제제도 일반

명예 등 인격권이나 기타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제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우선 누가 피해구제를 하느냐의 주체를 기준으로 언론계의 자율적인 피해구제와 법제도에 의한 타율적인 피해구제의 방식으로 나뉘볼 수 있다. 자율적 피해구제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과 개별 언론사의 보도윤리강령을 들 수 있다.

1)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언론계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1957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제정하면서 신문윤리강령을 제정, 채택했고 이어 1961년 9월 '신문윤리위원회'를 창립하였다. 그 동안 법률에 의해 다뤄졌던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문제를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일찍이 반론권을 보장하여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록 자기의 관찰 또는 주장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이를 편집상에 반영하여야 한다"('타인의 명예와 자유' 항목의 제5항)고 규정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창설 후 3년간은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한 제소사건만 다뤘으나 1964년부터는 자체심의 업무를 신설,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1964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제소심의'와 '자율심의'를 병행해 왔는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제소심의는 자연 사라지게 됐고 현재는 자율심의만 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와 통신사에 대하여 권고·경고·해명·정정·취소·사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까지 요구할 수 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1961년 9월부터 1981년 8월까지 30년간 다룬 제소심의 건수는 모두 215건에 이르며 그 중 99건이 제재 처리됐다. 제재 처리의 결정사유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으로 전체의 39건(39.4%)이었다.(언론연구원, 언론의 윤리강령과 보도기준, 1991년, 25쪽) 이런 사실은 언론보도에 따른 인권침해가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96년에 개정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반론권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걸쳐서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⑥(피의사실의 검증보도)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③(반론의 기회)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개별 언론사 윤리강령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언론계는 자율규제의 움직임이 높았다. 그 무렵 터진 촌지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자체적으로 자율규제 규범으로 ‘기자윤리강령’ 또는 ‘보도윤리강령’ 등을 제정,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에 독자와 시청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둔 바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윤리강령에서 반론권 조항은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못하고 단지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최근 제정된 ‘연합뉴스 윤리헌장’(1998년 9월 제정)의 경우 반론권 항목을 두고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사의 윤리강령과 비교가 되고 있다.

- ①고소·고발 등 사건이나 다수의 주장이 대립하는 갈등관계의 사안을 보도할 때에는 반대의견을 신도록 노력한다
- ②범죄의뢰자, 피의자, 피고인의 반론을 신도록 노력한다.
- ③당사자의 반론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대리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④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회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사화 할 수 있다.
- ⑤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후 보도한다.

그밖에 언론사들은 윤리규범의 준수를 표방하면서 자체 자율심의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도입된 옴부즈맨제도의 경우 인권침해나 오보를 사후에나 교정한다는 적극적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자사의 해명과 홍보의 기회 내지 수단으로 전락하여 시청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자율규제는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 민형법상 구제제도¹⁾

현행 언론피해구제의 법제도는 구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구제제도와 사후 구제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 구제제도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언론기관에게 그 ‘부작위(不作爲)’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명예 및 기타 인격권의 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점에서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제한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 허용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시사고발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도 역시 사전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적극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 구제제도는 민사상, 형법상, 그리고 언론법상의 구제제도로 나뉘볼 수 있다. 형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적 구제제도는 국가가 갖는 형벌권의 행사로서 표현 행위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민사적 구제제도는 반론보도청구권처럼 피해자가 표현 행위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표현행위를 사회질서 위반으로 파악하여 그 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것은 제재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무에서 형사적 처벌은 충분한 응징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분적으로 단기형의 선고 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통한 피해구제를 선호하는 까닭은 공권력을 빌려 공격적인 표현 행위자에 대

1)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조선일보사, 1997), 174-175쪽

해 양값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 고소에 따라 즉각적으로 검찰 등의 수사가 개시되면 민사상 또는 언론법상의 제소에 필요한 증거 등 소송 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사상으로는 언론보도가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인정된다(위자료 청구권). 그리고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으로서 피해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64조). 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는 구체적인 실무에서 ‘취소’ 또는 ‘정정’, 기타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²⁾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그렇지만 종래의 민형법상 피해구제제도는 소송실무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

첫째, 민형법상 구제제도가 일반소송절차를 거치므로 피해구제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등을 요구하게 되어 신속하고 용이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둘째, 민형법상 구제제도는 언론사 측의 과실, 고의 등 귀책사유와 법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데, 엄격한 소송절차에서 그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피해의 구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언론기관에 대한 단죄는 소극적이고 손해배상액이나 벌금형도 소액에 그치거나 단기형의 선고 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이것은 간접적인 징벌의 효과만 가질 뿐 피해자의 즉각적인 명예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자연 민형법상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가 그 특성상 무엇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준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곧 반론권 제도의 도입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언론법상 특수한 피해구제제도로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절차가 입법화돼 있다.

서구에서는 오래 전에 일반화된 이른바 반론권 제도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도입된 이래⁴⁾ 그 구제절차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피해에 대한 불만 처리 및 구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의 사건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내용에 의해 인권이나 사회적 법익 등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심의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그 후 1987년 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 반론보도청구권 제도와 언론중재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에 더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을 새로이 도입했다. 다시 1995년 말 정간물법 개

2) 이를 근거로 종래에 법원은 언론사에게 ‘사죄광고’를 내도록 판결해왔다. 그러나 1991년 헌법재판소는 동아일보사가 민법 제76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된다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며 인격의 존엄에 위해가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에는 △가해자가 패소한 민사금전 배상 판결문의 신문게재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문 게재 △명예훼손 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이 있음을 제시했다.

3)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조선일보사, 1997), 492-493쪽

4) 언론기본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말 정간물법 개정에 따라 1996년 7월부터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꾸어 현실화했다.

정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은 더욱 정리된 모습을 갖추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결정권이 인정됨으로써 중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높이게 됐다. 물론 제5공화국의 언론통제상황에서 언론기본법이 제정되고 반론권 제도가 도입된 정치적, 역사적 성격은 분명 지적돼야 하겠지만 반론권 제도 자체는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론권은 본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특정 사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 등 이해관계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반박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여 이미 행해졌던 사실보도에 대하여 무료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정간물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의 반대 진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중재절차와 재판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언론을 상대로 동일한 매체 영향력을 이용케 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실질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

한편 반론권이 법제화되면서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 내지 편집권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반론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언론에게는 편집권의 독립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반론보도문을 무료로 지면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로서 편집권과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편집권은 전적으로 언론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언론이 전문적인 관행과 판단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독립적인 기능이 보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편집권이다. 그런데 반론권이 제도화되고 확대되면 그만큼 언론의 편집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1974)' 사건에서 플로리다주의 반론권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는데, 신문의 편집권이 반론권보다 우선이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판례에 따라 미국에서 반론권 제도는 신문에 대하여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전적인 언론자유 개념이 철저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론권이 편집권을 위협해서는 언론자유가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편집권과의 충돌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도 논란거리의 하나이다. 언론의 입장에서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것이 귀찮고 두려워 정작 다루어야 할 사회적 쟁점을 다루지 않고 회피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FCC가 방송 반론권의 대표적인 제도였던 Fairness Doctrine을 포기한 것도 그런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 방송국들은 Fairness Doctrine에 입각하여 복잡한 쟁점을 적극 다루기보다는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해 아예 보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반론권의 제도화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5. 언론보도의 현실과 대응

1990년대부터 반론청구 및 언론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론의 보도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예컨대 마감시간에 따른 불충분한 사실 확인,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 특종의식과 속보 등 무리한 취재경쟁, 상업주의적 경쟁에 따른 선정적 보도, 출입처취재시스템과 보도자료에 따른 발표저널리즘, 기자 개인의 전문지식 및 경험 부족과 윤리의식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들을 들 수 있다.

특종 의식과 속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개인의 인격권이 소홀히 취급되기 마련이다. 또 무의식적으로 행사되는 위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 관행이 타인이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언론에 의한 피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막강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곤 했는데, 이런 소극적인 대응이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키워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는 보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독자를 상대하고 있는 신문이 어떻게 독자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를 하는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문제이다. 언론이 취재와 보도에서 가장 신중하게 대처해 할 대상은 출입처에서의 취재원이 아니라 바로 독자 일반인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피해 결과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반론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언론기관의 여건상 정확한 보도가 어려운 데다가 앞으로는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언론의 침해에 대하여 언론중재신청,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형사고소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주저함이 없이 선택하고 그런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법원도 손해배상에 대하여 배상액을 과거보다 상향조정해 갈 것이고 그 배상액 규모도 만만치 않아 언론사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세는 문제점들의 개선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반론권 요구에도 아직 인색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도 이제는 이런 변화 추세를 직시하고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언론의 신뢰성이 추락해갈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으로는 언론사의 경영에 압박을 주는 결과도 발생할 수도 있다.

첫째, 언론은 적극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언론이 과열 경쟁 속에서 사실 확인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이 문제이다. 오보의 가능성, 인권침해의 소지를 미리 검토하고 예방하는 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신속성을 요구하는 언론의 속성상 기사의 진실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보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지나친 확인 보도와 진실성 입증의 요구는 도리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반론 시비는 기사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는 기사의 사실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에서 빚어지고 있다. 미리 치밀한 취재로 정확한 기사를 썼다면 반론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언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보도내용과 방향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언론보도가 특종이나 속보 경쟁에 매달리기보다는 정확한 보도로써 한층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보도가 나간 뒤 관련 당사자에게 사후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보도와 제작에 앞서서 취재 및 기사작성 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법률적으로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주지만 보도에 앞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합리적인 균형을 갖췄는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사실보도는 철저한 확인을 거쳐 반론이나 정정이 불필요하게끔 작성해야 하며, 의견과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기사는 관련 당사자들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도하는 것이 좋다.

둘째, 언론보도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언론사 내부에서 기자들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언론관련법규 등의 재교육을 통해 언론 피해 발생에 대한 주의 노력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변호사에 의한 기사사전열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언론보도 피해예방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볼 만하다.

셋째, 사내 심의부서의 기능을 언론피해의 사전 예방장치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심의 기능은 경쟁지와 비교하는 식의 사후심의보다는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심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구라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의부서는 사전, 사후에 인권침해의 소지를 적발하고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심의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심의인력의 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에 언론사들이 직접 언론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다. MBC가 자사 보도 또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나서서 구제 또는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로 ‘언론피해구제센터(가칭)’를 만든다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다. MBC는 피해구제 대상과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법, 심의기구 구성방안 등을 마련 중인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장 직속의 별도 기구로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⁵⁾

이에 앞서 동아일보가 ‘독자인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4월 사고를 통해 “동아일보 보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독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독자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며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 피해구제의 절차는 자사의 독자서비스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일단 관련 취재부서와의 접촉을 주선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독자서비스센터가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독자인권위원회는 보도에 따른 피해를 기사를 통해 구제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물질적 보상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돌리고 있다.

그동안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에 인색했던 언론사들이 자사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다.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언론사 소송을 미리 예방하는 방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자칫 자사 홍보에 그치지 않고 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창구가 되기 위해서는 보도 및 제작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피해에 따른 물질적인 보상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언론은 보도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자기와는 서로 다른 태도와 주장도 같이 알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반론요구를 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기자의 식견과 객관성 부족, 부주의한 감정개입 등으로 보도피해를 일으키는 현실을 언론은 인정해야 한다. 보도기사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기자가 거기에 비판이나 논평을 가하는 식으로 ‘의견 개입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언론이 자존심 때문에 정정 내지 반론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는 사후 구제로는 완전히 회복하기가 힘든 만큼 해당 언론들은 반론 요구에 대하여 야박하게 거부할 필요가 없고, 또 반론보도가 언론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다. 언론사는 소송과 반론청구 등의 증가를 불필요한 부작용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설 경우 언론이 인권보호에 대하여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피해자에게 주게 되고 자칫 감정에 휘말린 소모적인 소송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6. 맺는말

현대 언론이 거대화, 독점화 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개인의 표현자유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개인의 인격권은 항상 거대 언론으로부터의 침해에 노정되어 있을 수 있다. 독자와 시청자로부터 유

5) 기자협회보 2001.11.3

리된 언론의 자유는 마치 언론사의 자유, 나아가 언론을 소유한 자의 자유로 변질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이런 이유로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언론사에 대하여 그 막강한 영향력과 무책임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일종의 공포 내지 경악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언론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감히 언론자유를 내세우면서도 보도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국민 당사자에게는 접근이나 반론을 통한 표현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율배반적 태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반론권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언론매체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사상이나 인격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발전되어 왔고 체계화된 인격권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재평가할 만한 가치를 지닌 권리인 것은 틀림없다. 현행의 반론권 제도는 언론 측이 반기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보도에 의한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론권을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언론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의 선택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 선택 이전에 언론이 보도 피해자의 반론 수용을 언론윤리의 당연한 덕목으로 삼고 이를 적극 실천해 가는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프로페셔널리즘이 강할수록 언론보도의 수준은 선진적이고 반론권을 둘러싼 시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는 있다. 반론권의 형태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결국 그것은 그 국민과 언론의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상대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